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최초 작성일자:2022/10/13 개정일자:2022/10/13

대체일: 2016/2/12

버전: 4.0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품 형태 | 혼합물 |
| 제품명 | CP 679 A |
| 제품 코드 | BU Fire Protection |

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사용 용도

자료없음

○ 제품의 권고 용도

자료없음

○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

자료없음

다. 공급자 정보

- 공급업체

| | |
|----------|--|
| ○ 회사명 | 힐티코리아(주) |
| ○ 주소 | (05836) 대한민국 서울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 길 12 (문정동, 한양타워 7층) |
| ○ 전화 | 080-220-2000 (수신자 부담) |
| ○ 긴급전화번호 | 080-220-2000 (수신자 부담) |
| ○ 전자우편 | sales.KR@hilti.com |

- 데이터 사양서 발행 부서

| | |
|--------|--|
| ○ 회사명 | Hilti AG |
| ○ 주소 | (9494) Liechtenstein Schaan Feldkircherstraße 100 |
| ○ 전화 | + 423 234 2111 |
| ○ 전자우편 | chemicals.hse@hilti.com |

응급 연락 번호

Schweizerisches Toxikologisches Informationszentrum - 24h Service
+ 41 44 251 51 51 (international)
080-220-2000 (수신자 부담)

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자료없음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○ 그림문자 (GHS KR)

해당없음

○ 신호어 (GHS KR)

해당없음

○ 유해·위험 문구 (GHS KR)

해당없음

○ 예방 조치 문구 (GHS KR)

해당없음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반복적 또는 장기간 피부 접촉 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제품 형태

혼합물

이 혼합물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

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. 계속 씻으시오.

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받으시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다량의 물로 피부를 씻으십시오.

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·조치를 받으시오.

다. 흡입했을 때

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받으시오.

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하시오.

환자가 휴식을 취하게 할 것.

라. 먹었을 때

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받으시오.

입을 씻어내시오.

토하게 하지 마시오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자료없음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 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적절한 소화제

포말, 건조 분말, 이산화탄소, 물 분무, 모래.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부적절한 소화제

강한 물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자료없음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소방 지침

물을 분무하거나 박무를 사용하여 노출된 용기를 식히시오. 화학 물질로 인한 화재시 소화에 주의하십시오. 소화에 사용한 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시오.

화재 진압 중 보호

자급식 호흡보호구, 전신 보호복, 호흡 보호구를 비롯한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화재 지역에 들어가지 마시오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
불필요한 인원은 대피시키시오.

보다 자세한 정보는 섹션 8: "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"를 참조하십시오.

세척 팀에 적절한 보호 장비 제공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하수구 및 공공 용수로 유입되지 않게 하시오.

액체가 하수구 또는 공공 용수에 들어가면 당국에 신고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제품을 기술적으로 회수하십시오.

누출물을 모으시오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

안전취급요령

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식사, 음료수 음용 또는 흡연 전 및 작업장을 떠날 때 손과 기타 노출된 부위를 순한 비누와 물로 세척하십시오.

습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작업 구역을 제대로 환기하십시오.

스프레이, 증기, 미스트 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
위생 조치

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

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십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보관 조건

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.

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.

사용 중이 아닐 시에는 용기를 단아서 보관하십시오.

피해야 할 제품

강염기.

강산.

피해야 할 물질

점화원.

직사광선.

보관 온도

5 - 25 °C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| |
|----------|
| CP 679 A |
| 자료 없음 |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그 밖의 참고사항

사용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고 금연하십시오.

다. 개인보호구

개인 보호구:

보호복, 보안경, 장갑,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십시오.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호흡기 보호: |
| [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]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 |

| |
|---------------|
| 눈 보호: |
| 화학용 고글 또는 보안경 |

| |
|------------------|
| 손 보호: |
| 보호장갑 (을) 착용하십시오. |

| |
|-----------------|
| 신체 보호: |
|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|

신체 보호 장비 기호:



9. 물리화학적 특성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외관 | 반용해성의. |
| 물리적 상태 | 액체 |
| 색상 | 백색. |
| 나. 냄새 | 특유의 냄새. |
| 다. 냄새 역치 | 미정 |
| 라. pH | 5.7 - 6.5 |
| 마. 녹는점/어는점 | 해당없음 / 자료없음 |
|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| 자료없음 |
| 사. 인화점 | 해당없음 |
| 아. 증발 속도 | 자료없음 |
| 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 | 해당없음. 불연성. |
|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| 자료없음 |
| 카. 증기압 | 자료없음 |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다. 용해도 | 자료없음 |
| 파. 증기밀도 | 자료없음 |
| 하. 비중 | 자료없음 |
| 거. n 옥탄올/물 분배계수 | 자료없음 |
| 너. 자연발화 온도 | 자료없음 |
| 더. 분해 온도 | 자료없음 |
| 러. 점도(동점도) | 자료없음 |
| 점도(역학점도) | 22000 - 34000 mPa.s |
| 머. 분자량 | 미정 |
| | |
| 기타 | |
| 밀도 | 1.28 - 1.42 g/cm ³ |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정상적 사용, 보관 및 운송 조건에서 반응하지 않는 제품.
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안정적.
 입증되지 않음.
 정상 사용 조건에서 알려진 위험 반응 없음.
 입증되지 않음.

나. 피해야 할 조건

권장 보관 및 취급 조건에 따른 조항 없음(섹션 7 참조).
 직사광선.
 극고온 또는 극저온.

다. 피해야 할 물질

강산.
 강염기.

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정상적인 보관 및 사용 조건에서는 유해 분해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 연무.
 일산화탄소.
 이산화탄소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|
| 경구 | 분류되지 않음 |
| 피부 및 눈 접촉 | 분류되지 않음 |
| 흡입 | 분류되지 않음 |

나. 건강 유해성

급성 독성 (경구):

분류되지 않음

급성 독성 (경피):

분류되지 않음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급성 독성 (흡입):

분류되지 않음

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:

분류되지 않음

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:

분류되지 않음

호흡기 과민성:

분류되지 않음

피부 과민성:

분류되지 않음

발암성:

분류되지 않음

생식세포 변이원성:

분류되지 않음

생식독성:

분류되지 않음

특정 표적장기 독성 (1 회 노출):

분류되지 않음

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:

분류되지 않음

흡인 유해성:

분류되지 않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생태학 - 일반 | 이 제품은 수생 생물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환경에 장기적 악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음. |
| 수중 환경에 유해, 단기 (급성) | 분류되지 않음 |
| 수중 환경에 유해, 장기 (만성) | 분류되지 않음 |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|
| CP 679 A | |
| 잔류성 및 분해성 | 입증되지 않음. |

다. 생물 농축성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CP 679 A | |
| 생물 농축성 | 입증되지 않음. |

라. 토양 이동성

자료없음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마. 기타 유해 영향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오존층 파괴물질 | 분류되지 않음 |
| 기타 유해 영향 | 자료 없음 |
| 그 밖의 참고사항 |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 |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지역 /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.
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

지역 /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.
지방, 관할, 국가 및/또는 국제 규정에 따라 유해물질 또는 특수 폐기물 수집 장소 에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
섹션 14: 운송에 필요한 정보

ADR / IMDG / IATA / RID / 에 따라

| ADR | IMDG | IATA | RID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14.1. 유엔 번호(UN No.) | | |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| 14.2. UN 적정 선적명 | | |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| 14.3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| | |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| 14.4. 용기등급 | | |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| 14.5. 환경 유해성 | | |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| 가용 추가 정보 없음 | | | |

14.6. 사용자들 위한 특별 주의사항

내륙 수송

해당없음

해상 운송

해당없음

항공 운송

해당없음

철도 수송

해당없음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14.7. MARPOL 별첨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대량 운송

해당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|
| 제조금지물질 | 해당없음 |
| 허가대상물질 | 해당없음 |
| 노출기준설정물질 | 해당 됨 |
| 허용기준설정물질 | 해당없음 |
|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| 해당 됨 |
|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| 해당없음 |
|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| 해당 됨 |
|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물질 | 해당없음 |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| | |
|--------|------|
| 유독물질 | 해당없음 |
| 금지물질 | 해당없음 |
| 제한물질 | 해당없음 |
| 사고대비물질 | 해당없음 |

다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한국 기존 화학 물질 목록(KECI) | 해당 됨 |
|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| 해당없음 |
| 중점관리물질 (한국) | 해당없음 |
| CMR 물질 (한국) | 해당없음 |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| | |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위험물 안전 관리법 | 해당 됨 | CP 679 A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| 해당없음 |
| 폐기물의 종류 | 자료없음 |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국내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| 해당없음 |
|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| 해당없음 |

국제

EU 규제정보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EU 후보 목록 (SVHC) |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|
| EU authorization 목록 (REACH Annex XIV) | REACH 부록 XIV 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|
| EU restriction 목록 (REACH Annex XVII) | 해당없음 |

미국 규제정보

| | |
|---------------|------|
| CERCLA 103 규정 | 해당없음 |
| EPCRA 302 규정 | 해당없음 |
| EPCRA 304 규정 | 해당없음 |
| EPCRA 313 규정 | 해당없음 |

CP 679 A

물질안전보건자료

고용노동부고시 2020-130 에 따름

국제 협약

자료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자료의 출처: | 물질 및 혼합물 분류, 라벨 부착 및 포장에 관한 2008 년 12 월 16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(EC) No 1272/2008, 지침 67/548/EEC 및 1999/45/EC 개정 및 폐지, 규정(EC) No 1907/2006 개정. |
| 나. 최초 작성일자: | 2022-10-13 |
| 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: | 4.0, 2022-10-13 |
| 라. 기타: | 없음. |
| 마. 변경 표시: | 자료없음 |

본 정보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며 보건, 안전 및 환경 요건에 대해서만 제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제품의 특수한 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.